회계규칙

제정 2009. 7. 27. 개정 2009. 12. 31. 개정 2018. 9. 6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회계규정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 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규정 또는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.
- 제3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지출원인행위"라 함은 대내·외의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2. "지출발의행위"라 함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3. "가지급금"이라 함은 긴급을 요하거나 금액의 불확실한 경비지출을 위하여 사전에 지급되고 사후 정산을 요하는 일시적 지출자금을 말한다.
- 제4조(거래의 구분) 회계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귀속사업연도)** 회계거래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에 귀속한다. 다만, 그 발생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.
- 제6조(회계과목) ①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과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수지예산과목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.<개정 18.09.06>
 - ②지출예산 과목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도록 정하여 회계규정에 의한 예산편 성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.

제2장 수입과 지출

- 제7조(결의서에 의한 처리) 진흥원의 모든 회계거래는 [별지 제2호] 수입·지출·대체 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지출발의행위)** ①모든 지출은 지출발의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하다.
 - ②지출발의행위는 당해 소관부서장이 행하며,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제9조(지출원인행위) ①지출원인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 지출원인행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각 소관부서장이 행한다.
 - 1. 구매, 시설, 용역계약 등의 체결
 - 2. 진흥원 규정에 의한 출장 등 지출확정 승인
- ②각 소관부서장은 제8조의 지출발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
- 2. 진흥원 업무와 무관한 사항
- 3.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
- 4. 기타 진흥원에 상당한 손실이 예견되는 사항
- ③각 소관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지출발 의행위자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0조(결의서의 작성) ①결의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부서장의 수입·지출·대체발의행위를 통하여 회계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.
 - 1. 지출거래 : 지출결의서
 - 2. 수입거래 : 수입결의서
 - 3. 대체거래: 대체결의서
- ②회계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- 1. 지출발의행위의 적정성 여부
- 2. 지출원인행위의 제9조제2항의 이행여부
- 3. 증빙서류의 하자 유무
- 4. 처리예산과목의 적정성 및 예산의 검토
- 5. 기타 규정에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
- 제11조(소액현금운영) 회계담당부서는 소액의 지출거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150 만원의 한도내에서 소액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.

- 제12조(가지급금) 가지급금에 의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지출계정 또는 지출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
 - 2. 소정의 절차를 필할 여유가 없는 경우
 - 3. 지출목적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
 - 4. 업무수행지에서 발생한 경비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3조(가지급금의 정산) 가지급금을 사용한 부서의 장은 가지급금 사용결과에 대한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, 사용목적이 종료된 즉시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지불의 거절) 지출승인권자는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.
 - 1. 지출원인행위의 누락
 - 2. 예산범위 및 예산기간의 초과
 - 3. 당해 거래 및 증빙서류의 하자 발견
 - 4.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누락
 - 5.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진흥원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
 - 6. 기타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제15조(청구행위) ①진흥원의 대외 채권발생에 따른 청구는 원장의 명의로 한다.
 - ②청구에 관한 세부절차는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16조(청구담당자) 회계담당 부서의 장은 진흥원의 제반청구 행위시 원장을 대리한다.
- 제17조(수입조치) ①수입행위는 당해 수입의 발의부서에서 담당한다. 다만, 정부출연금 등은 회계담당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계담당부서는 수입발의 내용을 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출납담당자는 수입발의부서의 수입의뢰서에 의하여 수입조치하고,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한다.
- 제18조(영수증) ①출납담당자는 수입거래에 대한 수입거래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확인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.
 - ②영수증의 날인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한다.

- 제19조(수입의 처리) ①수입행위담당자 또는 출납담당자는 현금 또는 현금성 유가증권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소정의 은행계좌에 예입하고 은행발행 입금 증을 수령하여야 한다.
 - ②출납담당자는 현금 등의 수입의 경우, 은행잔고를 파악하여야 한다.
 - ③출납담당자가 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수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1. 어음 수입의 근거
 - 2. 어음 추심의 확실성
 - 3. 필요한 경우 거래처 신용조사
- 제20조(수입의 유보) ①수입행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유보할 수 있다.
 - 1. 수입발의행위의 누락
 - 2. 어음 등 수입에 있어 수입근거 및 추심의 불확실성
 - 3. 수입발의행위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절차의 누락
 - 4. 기타 부당한 수입으로 인정된 경우
 - ②수입행위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수입의뢰자에게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)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.
 - 1. 비유동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
 - 2.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
 - 3. 내용연수를 1년 이상 연장하는 지출
 - 4.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지출
 - 5.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이 그 이용가치를 증가 시키는 경우
 - ②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계상한다.
 - 1. 진부한 비유동자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지출
 - 2. 원래의 능력만을 유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지출
 - 3. 지출된 비용의 효과가 단일 회계년도 내에 소멸하는 지출
 - 4. 특수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대규모의 수선이 예상되는 경우 수선충당금으로 계상한 내용

제3장 계정과목과 장표

- 제22조(전표) 회계거래의 기록과 승인을 위한 입금·출금·대체전표는 수입·지출·대체 결의서로 대체 사용한다.
- 제23조(결의서의 작성) 결의서는 계정과목, 결의금액, 결의서번호 및 일자, 거래내용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증빙서류)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할 증빙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수입증빙서류
 - 가. 수입의뢰부서에서 수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수입의뢰서
 - 나. 은행입금증 또는 입금내역통장 사본
 - 다. 수입근거 및 관련서류
 - 2. 지출증빙서류
 - 가. 물품구입(공사포함)대금의 지불: 계약서 및 주문서, 검수조서, 청구서, 영수증
 - 나. 인건비 지급 : 인건비 계산내역서, 영수증
 - 다. 기타 : 지급명세서, 청구서, 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
 - 3. 대체증빙서류 :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 증빙서류
 - 4. 영수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불증명에 갈음한 증빙서류(지급확인서 등)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 - 5. 원격지 송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송금영수증으로 제2호의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.
- 제25조(지급확인서) ①지출거래에서 영수증의 수령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및 담당부서에서 그 지급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[별지 제5호] 지급확인서로써 이를 갈음하다.
 - ②지급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.
 - 1. 사용일자
 - 2. 사용목적 및 내역(구체적으로 명시)
 - 3. 사용금액
 - 4. 사용자의 서명날인
 - 5. 담당부서장의 승인
- 제26조(장부의 기록) 회계장부는 계정과목 순으로 구분하여 거래일체를 명확하게 기록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장부의 마감)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예금출납부 및 금전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.
- 2. 총계정원장, 각계정원장, 기타 보조부는 매월말 마감한다.
- 3. 모든 장부는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 말에 폐쇄하고, 차 회계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다.
- 4.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다음 연도 장부에 이월한다.

제28조(장부의 정정) ①장부의 정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- 1. 오기의 정정은 평행주선 2선으로 말소 정정하며, 도말행위를 금지한다.
- 2. 금액의 오기는 전액을 평행주선 2선으로 말소 정정한다.
- 3. 오기로 인하여 공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평행 주선 2선을 긋고 "공란"이라 기입한다.
- 4. 전면이 오기 또는 공백으로 되었을 때에는 주사선 2선으로 말소한다.
- ②출납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날인을 하여야 한다.

제4장 금전출납

- 제29조(출납책임자 및 출납담당자의 임무) 출납책임자 및 출납담당자는 타업무와 독립 되게 지정하며,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예금,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
 - 2. 제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른 증빙서류의 징구
 - 3. 회계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임무

제30조(금전출납 취급) 출납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전을 출납한다.

- 1. 진흥원의 제반거래에 수반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영수증 발행은 출납담 당부서가 직접 취급하며, 금전출납은 일정한 장소에서 행한다.
- 2. 금전출납은 회계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발부된 전표와 제증빙서류를 대조하여 출납하여야 한다.
- 3. 금전출납은 수납자 또는 영수자가 제시한 금융기관의 수취계좌에 계좌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납자(영수자)의 요청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현금으로 출납할 수 있다.
- 4. 수표의 수납시에는 수납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.
- 5. 영수증의 인감은 계약서 날인인감과 대조하여야 하며,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계약서 인감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제31조(소액현금출납부)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소액현금출납부는 거래발생 순위별로 기장하여 매일 마감하여야 한다.
- 제32조(현금실사) ①출납담당자는 매일 현금잔고를 실사하여야 한다.

②출납책임자는 월 1회 이상 현금 및 유가증권을 실사하여 현금출납부 및 유가증권 대장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.

제33조(예금조회확인) 회계담당부서장은 매월 말 예금잔액증명서와 회계장부를 대조하고 차액 발생시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.

부 칙<2009. 7. 27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9. 12. 31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입·지급(대체) 신청서

협	조	_				담 당	팀	장	단 장	본부(실)장	원 장
					결						
통제 번호					재						
금약	액	일금	(\)			
발의-	부서					발의근	거				
발의역	일자		년	월 역	길	발의번	호				
No.		내 역			প্]산과목			금 액	지급처. (계좌번호 계좌 ¹	호이체시
	-										

접수일자: 년 월 일

71	담 당
접	
수 	

수입·지출(대체) 결의서

결	담 당	팀 장	단장	본부(실)장	원 장
재					

결의		결의	1.3	<u>0</u>]	റി	결의	
번호		일자	년	월	일	총액	
내	역						
거리	H처						

번호	계 정 과 목	차 변	대 변	비고

조치일자 : 년 월 일

출 납

가지급신청서

		협	조	
ſ				
ſ	통제 번호			
L	번호			

	담 당	팀 장	단 장	본부(실)장	원 장
결					
재					
.,					

아래 내용으로 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부 서 명		신 청 자	
관련근거		신청사유	
지급요구일	년 월 일	정산예정일	년 월 일

신청내역

예산과목	금액	사용목적 및 내역
계		

	담당
접	
수	

가지급정산서

	협	조	
통제			
통제 번호			

	담 당	팀 장	단 장	본부(실)장	원 장
결					
 재					
- "					

아래 내용으로 가지급 정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부 서 명			성 명	!		
관련근거				목적사용여부		
신 청 일	년 월 일		정 산 일		년 월 일	
내역(원천징수내역 포함) :		정산지연/전용사유 :				
 정산내역 (※ 정산액 반납시 각 계정과목별로 처리)						
예산과목	신청액	집행액	정산액		사용내역	
계						

	담당
접	
수	

지급확인서

일금 : 원정 (₩)

상기 금액을 용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사용자: (인)

승인자: (인)

o 사용내역

계정과목 :				
지출목적 :				
일 자	내	역	ПП	어
	Й			